

사회복지법인 LG복지재단

2023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1. 회의소집통지 내용

- 가. 통 지 일 : 2023년 7월 4일(화)
- 나. 통지대상 : 소집 통지자(대표이사) 외 이사 6명, 감사 2명
- 다. 통지방법 : 등기우편
- 라. 통보의안(회의목적)
 - 제1호 의안 : 2023년 제1차 추경예산 편성의 건
 - 제2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 인건비 규정 개정의 건

2. 회의일시 : 2023년 7월 13일(목), 오전 11시

3. 회의장소 : LG마포빌딩 10층 회의실

4. 회의안건

- 제1호 의안 : 2023년 제1차 추경예산 편성의 건
- 제2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 인건비 규정 개정의 건

5. 이사정수 : 7명

6. 출석임원 : 구연경, 한승희, 한준호, 윤경희, 신영수, 박영배, 인요한 (이사 7명)
안경태, 안용석 (감사 2명)

7. 결석임원 : 없 음

8.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구연경 대표이사 : 참석 임원에게 감사를 표하다. 개회를 위한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LG복지재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9. 회의내용

가. 제1호 의안 : 2023년 제1차 추경예산 편성의 건

1) 의안설명

- 구연경 대표이사 : 제1호 의안인 2023년 제1차 추경예산 편성의 건을 상정하고 실무자에게 안건설명을 요구하다.
- 최민호 국장 : 목적사업 예산 증액, 운영비 지출 증가 등을 반영한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함을 알리다. 법인회계로 본예산 대비 409,193천원이 증가한 7,398,474천원, 수익사업회계로 본예산 대비 824,714천원이 증가한 9,467,234천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하다.

덧붙여, 목적사업 변동사항으로 『사할린 한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지원 대상자의 고령화 등에 따른 출국포기자가 발생하였으며, 협력기관인 대한적십자사와의 협의를 거쳐 출국포기자에 대한 지원을 물품지원으로 대체하고자 함을 보고하다.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목적사업 변동사항을 포함한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다.

첨부. 2023년 제1차 추경예산 편성안

(법인회계)

(단위 : 천원)

구분	관별	제1차 추경(A)	본예산(B)	증감(A-B)
수입	후원금수입	1,200,000	1,200,000	0
	전입금	4,200,000	3,800,000	400,000
	이월금	1,998,474	1,989,281	9,193
	계	7,398,474	6,989,281	409,193
지출	사무비	495,000	456,000	39,000
	재산조성비	170,000	0	170,000
	사업비	4,755,164	4,528,000	227,164
	과년도지출	42,836	20,000	22,836
	예비비	1,935,474	1,985,281	△49,807
	계	7,398,474	6,989,281	409,193

(수익사업회계)

(단위 : 천원)

구분	관별	제1차 추경(A)	본예산(B)	증감(A-B)
수입	재산수입	4,027,000	3,847,000	180,000
	이월금	5,440,234	4,795,520	644,714
	계	9,467,234	8,642,520	824,714
지출	재산조성비	955,000	955,000	0
	전출금	4,200,000	3,800,000	400,000
	예비비	4,312,234	3,887,520	424,714
	계	9,467,234	8,642,520	824,714

2) 결의내용

- 참석이사 전원 : 배부자료와 실무자와의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목적사업 변동사항을 포함한 추경 사유와 내용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다.
- 한승희 이사 : 추경 사유가 타당하고 그 규모가 적절한 바 원안 승인을 발의하다.
- 신영수 이사 : 승인되는 예산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를 요청하고, 한승희 이사의 발의에 동의하다.
- 박영배 이사 : 신영수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참석이사 전원 : 2023년 추경예산 편성 원안에 전원 찬성하다. (찬성 7 / 반대 0)
- 구연경 대표이사 :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제1호 의안인 2023년 제1차 추경예산 편성의 건이 원안 승인되었음을 선언하다.

나. 제2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1) 의안설명

- 구연경 대표이사 : 제2호 의안인 감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실무자에게 의안 설명을 요구하다.
- 최민호 국장 : 법인의 감사이신 안경태 감사님의 임기가 '23년 7월 31일 만료 예정인바 후임 감사 선임이 필요함을 알리다. 구체적인 안건 설명 이전에, 정관 제 28조 의결제척사유를 준용하여, 임원 선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이 논의 예정인 바 안경태 감사에게 잠시 퇴실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안경태 감사 이에 응하여 잠시 퇴실하다.)
- 최민호 국장 : 안경태 감사님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의거 법인에 두어야 하는 전문가 감사이시며, 전문가 감사 추천기관인 평택시청으로부터 연임 추천 공문을 수신하였음을 알리고, 전문가 감사 선임을 위한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다.

* 첨부. 전문가 감사 추천 공문

2) 결의내용

- 참석이사 전원 : 배부자료와 실무자와의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전문가 감사 선임을 위해 상호 논의하다.
- 한준호 이사 : 안경태 감사는 회계분야에서 남다른 경력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 법인의 감사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해온바 안경태 감사의 연임을 발의하다.
- 인요한 이사 : 한준호 이사의 발의에 동의하다.
- 박영배 이사 : 인요한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참석이사 전원 : 안경태 감사의 연임에 전원 찬성하다. (찬성 7 / 반대 0)
- 구연경 대표이사 : 표결에 따라 안경태 감사의 입실을 요청하고, 연임 승낙 의사를 묻다.

- 안경태 감사 : 임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감사 연임을 승낙하다.
- 구연경 대표이사 :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법인의 전문가 감사로 안경태 감사가 연임되었음을 선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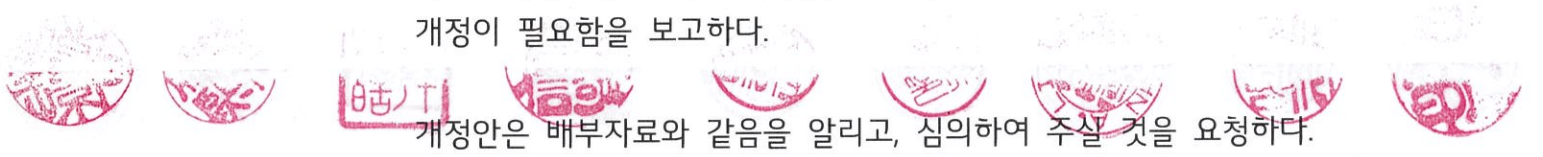
※ 감사 선임 결과

구 분	성 명	생 년	임 기	비 고
감사 (전문가감사)	안경태	1954년	2023. 8. 1. ~ 2025. 7. 31.	연 임

다. 제3호 의안 : 인건비 규정 개정의 건

1) 의안설명

- 구연경 대표이사 : 제3호 의안인 인건비 규정 개정의 건을 상정하고 실무자에게 의안 설명을 요구하다.
- 최민호 국장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내지 제13항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임직원 개별 인건비 8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손금산입을 인정받기 위해 주무관청인 경기도청에 인건비 규정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며, 이에 인건비 규정 일부 개정이 필요함을 보고하다.



개정안은 배부자료와 같음을 알리고,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다.

첨부. 인건비 규정 개정(안)

현행 규정	개정안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LG복지재단에 근무하는 사원에게 적용된다.	제2조(적용범위) ----- LG복지재단 사무국 운영규정 제28조 정년(만60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정규직원에게 -----
제4조(연봉) 1. 사원의 연봉은 기본급, 정기상여, 명절상여로 구분한다. 2. 기본급은 연봉의 1/20, 정기상여는 연봉의 1/40, 명절상여는 연봉의 1/20로 한다. 3. 연봉 지급방법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당월 24일 사원이 지정한 계좌로 『기본급』과 『정기상여』를 각각 지급하며, 『명절상여』는 설, 추석에 각각 지급한다. 4. 연봉협상의 시기는 매년 3월 1일로 한다. 5. (신 설)	제4조(연봉) 1. (좌 동) 2. (좌 동) 3. (좌 동) 4. (좌 동) 5. 전항의 연봉협상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매년 별도 고시하는 표준연봉테이블(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경영성과급) 1. 회사는 전년도 성과를 기반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2. 지급률, 지급여부 및 지급시기는 매년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6조(경영성과급) 1. (좌 동) 2. ----- 단, 지급률은 기본급의 300%를 초과할 수 없다.

2) 결의내용

- 참석이사 전원 : 배부자료와 실무자와의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인건비 규정 개정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다.
- 인요한 이사 : 규정의 구체화와 경영성과급의 상한선 설정을 위한 개정으로 인건비 규정 개정 사유와 개정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 승인을 발의하다.
- 신영수 이사 : 인요한 이사의 발의에 동의하다. 이어, 인건비 규정 승인을 위한 빈틈없는 후속조치를 당부하다.
- 한준호 이사 : 신영수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참석이사 전원 : 인건비 규정 개정 원안에 전원 찬성하다. (찬성 7 / 반대 0)
- 구연경 대표이사 :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인건비 규정 개정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하다.

10. 폐회선언

- 구연경 대표이사 : 금일 추가 논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LG복지재단 2023년 제2차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2023년 7월 13일

사회복지법인 LG복지재단

대표이사	구연경 (인)	이사	한승희 (인)
이사	한준호 (인)	이사	윤경희 (인)
이사	신영수 (인)	이사	박영배 (인)
이사	인요한 (인)	감사	안경태 (인)
감사	안용석 (인)		